

# 한옥과 도시건축 경관의

## 상관성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무소 대표

한옥의  
아름다운 처마선

한옥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누구나 처마곡선을 으뜸으로 친다. 선이 안으로 휘어 있으면서 양 끝 추녀가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간 3차원 곡선의 처마선은 한옥만의 고유한 형태요소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한옥에서는 그 아름다운 곡선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 북촌을 들 수 있다. 물론 북촌 한옥은 원래 다른 지역보다 처마 길이가 짧고 처마곡선도 완만한 편이지만, 신축이나 개축하는 한옥에서는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 처마가 직선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벽을 처마 끝까지 확장해 처마가 없는 경우도 혼하다.

우리는 그것을 한 치라도 더 실내공간을 넓히려는 건물주의 욕심이나 한옥에 대한 무지함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한정된 대지에서 조금이라도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 ©국가한옥센터, 2012



전주 한옥마을의 모습 ©국가한옥센터, 2012

더 건축면적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듯하다. 따라서 건물주보다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법」의 경직성을 먼저 짚어 보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축법」의 경직성

북촌에서 새로 지어지는 한옥과 옛 한옥을 비교해 보면 「건축법」의 경직성이 주는 폐해를 금세 이해할 수 있다. 옛 한옥들은 처마선이 도로선을 침범하거나 이웃 대지경계선을 넘어 서로 겹치거나 맞물려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그것은 「건축법」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운데가 안으로 흔 처마곡선을 직선의 대지경계선에 맞추려면 양 끝 추녀 부분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기 마련이다. 추녀까지 대지경계선 내에 들어오게 하려면 처마로 인한 공지가 너무 많이 생긴다. 이 때문에 처마가 이웃집 경계선을 좀 넘어도 서로 묵인했다. 그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법」은 그러한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한다.

대지경계선 침범을 서로 암묵적으로 용인하다가도 때로는 다툼이 빚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건축법」은 대지경계선 내에 대지 안의 공지를 두어 건축선으로 정하고, 건축물이 그 선을 절대 넘지 못하게 해 건물을 그 안에 가두는 확고한 경계를 정했다. 이러한 경계는 한옥처마까지도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도록 했다. 처마가 있는 한옥은 처마 길이만큼 대지 가용면적이 줄어들고, 처마에 안허리곡이라도 주면 그만큼 더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한옥 처마선의 변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대지경계선 침범

북쪽 일조사선 제한은 한옥에 더욱 치명적이다. 작은 대지의 경우 한옥을 대지 남쪽 경계선에 붙이고 북쪽에 마당을 둔 북향집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 높이 9m까지 일괄 1.5m를

양옥과 같은 2층 한옥  
이격하도록 「건축법」이 바뀌고 나니 점차 북촌에 지어지는 한옥도 2층으로  
짓지 않으면 손해 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북촌에도 앞으로는 대지  
한가운데 놓이는 양옥과 같은 2층 한옥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대지 안의 공지나 북쪽 일조사선 제한에 관한 법은 대지 한가운데  
건물을 앉히는 이른바 양옥건물에 맞는 법이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집  
가운데에 마당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 때문에 대지 가운데에 우뚝  
선 양옥건물처럼 한옥의 특성을 잃고 있다. 한옥이 형태만 유지한 채 공간적  
내용은 양옥처럼 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맞지 않는 법 때문에 북촌에 새로 지어지는 한옥은 거의 기존  
주택을 개축하는 수준으로 집을 지으면서 이 법을 피해 간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적용하면 신축 한옥은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하나는 처마 밑 공간까지 실내를 확장해 부족한 실내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아름다운 한옥처마를 기대할 수 없다.



북촌에 신축된 2층 한옥의 모습 ©김용미, 2013

또 하나는 한옥으로 둘러싸인 중정 마당을 포기하고 양옥처럼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하게 한옥을 짓는 것이다. 이때는 건물 외곽에 여유 공간이 있으므로 유려한 처마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 공간이 작아서 이 경우에는 보통 2층으로 올려서 실내면적을 확보한다. 2층 한옥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축법』에 의해 한옥이 변모돼 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자체의 한옥 보존 및 지원 관련 조례에 의해 한옥이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고착돼 가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한옥들은 한옥 심의과정에서 ‘외부의 창호는 반드시 전통창살의 창호로 해야 한다’거나 ‘기단부 또는 지층부는 반드시 화강석으로 해야 한다’는 등 하나의 전통 유형만을 따르도록 강요받는다. 이는 한옥의 다양성이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옥에 불리한 부분은 많다.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로 정해진 규정도 그중 하나다.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을 20%까지 낮춰 놓은 것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옥의 경우는 최고 5층까지 가능한데 한옥의 경우는 거의 1층으로밖에 짓지 않는다. 따라서 한옥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같은 20%로 양옥의 1/5밖에 짓지 못한다. 이 조건은 누가 봐도 한옥에는 매우 불합리한 법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한옥의 경우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올리고 대신 최고 용적률을 50%로 조정하도록 법 개정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자연훼손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건폐율 20%의 3~4층 양옥과 건폐율 40%의 1층 한옥, 어느 것이 자연경관을 위해 더 권장할 만한 것인지는 건축의 문외한도 알 일이다.

현재 법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 한옥을 지을 때 건폐율이 작기 때문에 대지를 크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2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가끔 들판에 2층으로 우뚝 솟은 한옥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새로 조성되는 한옥마을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몇몇 사례를 보면 예외 없이 마을의 중심 길의 폭은 12m이고 집 앞 가장 좁은 도로가 6m인 격자형 조직으로, 일반 택지개발지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한옥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건축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한옥을 한옥답게, 한옥마을을 한옥마을답게 만들기가 어렵다. 최근에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한옥의 특수성에 맞춰 법령을 조금씩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한옥의 변화가 시대적 요구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법 때문에 억지로 바뀌어 가는

『건축법』에 의해 한옥이 변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옥, 양옥의 1/5



치미를 달아낸 모습(전주한옥마을) ©국가한옥센터, 2012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토에 어떤 한옥을 지어야 할까? 법과 제도가 가능하면 좀 더 한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한옥이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다.